

## 2013년 동춘2동 종합감사 결과



인천광역시연수구  
감사실

# 2013년 동춘2동 종합감사 결과

## I 감사 목적

- ❖ 행정기관의 최일선 기관인 동 주민센터의 예산집행, 사회복지, 주민등록 및 민방위 업무분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행정의 효율성 및 재정 운영의 합리성을 도모하고
- ❖ 공직기강 해이 및 불합리한 업무처리 실태 등 문제점을 도출하여 이를 개선·시정함으로써 주민들로부터 신뢰받는 구정행정 구현에 기여하고자 함

## II 감사 개요

### 근거

- 인천광역시 연수구 자체감사규칙
- 2013년도 감사·감찰 기본계획

### 감사기간 : 2013. 5. 20 ~ 5. 23 (4일간)

### 감사범위 : 2011. 5. 1일부터 추진한 업무 전반

### 감사반 : 감사담당 외 3명

### 중점감사 사항

- 예산집행의 투명성 확보 및 회계업무 절차의 적정성
- 주민센터 운영 및 통·반장 관리 분야

- 복지행정서비스의 법규(지침) 준수 여부 및 지원관리 실태
- 주민등록, 인감 등 민원업무 처리 실태
- 민방위·공사분야 및 민원사무처리 실태

### Ⅲ 감사결과

#### 1. 총괄

##### □ 감사처분내역

- 행정상 조치 총 10건
  - 시 정 4 건
  - 주 의 6 건
- 재정상 조치 총 2건
  - 환 수 579천원/16건

##### □ 감사처분요구 목록

연 번	지 적 사 항	처 분 요 구			비고
		행정상 조 치	재정상 조 치	신분상 조 치	
	계	10	2		
1	주민자치센터 강사 소득세(지방소득세) 미부과	시정	환수 417,450원/11건		
2	업무추진비 집행 부적정	주의			
3	동춘2동 주민자치센터 강사 채용 부적정	주의			
4	반장 위·해촉 등 관리소홀	시정	환수 162,000원/5건		
5	관용차량 운행일지 미작성	주의			
6	자동인증기 관리업무 소홀	주의			
7	주민등록번호조립부 및 주민등록번호부여대장 작성 소홀	주의			
8	장애인자동차 표지 발급 부적정	시정			
9	하자검사 업무소홀	시정			
10	민방위 업무처리 소홀	주의			

## 2. 총 평

- 동춘2동은 송기천과 송도국제도시의 수변공원 및 봉제산을 삼면으로 접하고 있는 친환경 지역으로 7개의 대단위 아파트 단지로 구성된 주거밀집지역과 초·중·고교 및 인천평생학습관 등의 교육시설, 상업지역이 혼합되어 있는 살기 편리한 지역임
- 주민대다수가 중산층으로 생활여건이 비슷하고 자기성장 욕구가 강한 젊은 세대가 많이 거주하며, 전·출입 등 유동인구가 적어 비교적 안정된 지역임

### 【동춘2동 기본현황】

면적 (km <sup>2</sup> )	가구수	인구(명)	행정조직		공무원수(명)	
			통	반	정원	현원
1.72	7,110	21,873	30	131	8	9

- 동장을 중심으로 전직원이 주민불편 해소 및 대민서비스 향상을 위해 합심하여 근무하고 있었으며, 감사기간 중 성실하고 적극적인 수감태도로 임하여 감사일정을 무사히 마칠 수 있었음
- 금번 실시한 종합감사는 2011년 종합감사 이후 2년 만에 실시하는 것으로 예산회계, 주민자치센터운영, 주민등록, 사회복지, 민방위 등의 동행정 전반에 대해 총 10건의 위법사례를 적발하여 행정상 조치(시정4, 주의6), 재정상 조치(환수 579천원)를 처분 요구함
- 따라서 이번 감사에서 지적된 분야에 대하여 조속한 시정조치는 물론, 향후에는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직무교육을 강화하고, 업무연찬 등에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람.

## IV 주요 지적 사항

### ① 센터운영회계 주민자치센터 강사 소득세(지방소득세) 미부과

- 소득세법 제127조(원천징수의무)에 의하면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사업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3/100의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하고 지방세법 제86조 및 제89조에 의하면 납세의무가 있는 자에게 소득세액 10/100의 지방소득세분을 부과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그러나, 동춘2동 주민센터에서는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운영과 관련하여 강사수당을 지급하면서 2011년(1월-12월)과 2012년(1월-10월)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는 사실이 있음

【 처분요구 ≧ 행정상 시정, 재정상 환수 】

### ② 센터운영회계 업무추진비 집행 부적정

-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집행에 관한규칙 제3조(업무추진비의 집행) 별표 업무추진비 집행대상 직무활동의 격려품 지급대상은 소속 상근직원과 이 재민 및 불우소외계층, 시책 또는 지역홍보, 학술·문화예술·체육활동유 공자, 업무추진을 위한 각종 회의·간담회·행사, 현업(현장)부서 근무자, 업무추진 유관기관 등의 직무활동에 집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그러나, 동춘2동 주민센터에서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를 집행함에 있어 업무추진비 집행대상 직무활동에 포함되지 않는 사항에 대하여 집행한 사실이 있음

【 처분요구 ≧ 행정상 주의 】

③

**센터운영·회계**

**동춘2동 주민자치센터 강사 채용 부적정**

- 인천광역시연수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6조(시설 및 프로그램) 제1항에 의하면 “인천광역시연수구청장은 자치센터의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동에 필요한 시설과 프로그램을 갖추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 또한, 제7조(운영) 제1항에 의하면 “자치센터의 시설관리 및 프로그램 운영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동장이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그러나, 동춘2동 주민센터에서는 2013년도 주민자치센터 강사 채용에 있어 2012년도에 채용된 강사를 공개채용 절차 없이 2013.12.31일까지 협약서만으로 채용·확정하였고,
- 운영조례에서 정한 주민자치위원회의 심의 없이 부적정하게 채용한 사실이 있음

**【 처분요구 ⇨ 행정상 주의 】**

④

**통·반장 관리**

**반장 위·해촉 등 관리소홀**

- 인천광역시연수구통반설치조례제5조 및 동법 시행규칙제2조,제5조에 의하면 통에 통장, 반에 반장을 두며, 통·반장은 동장이 위촉한다. 통장은 당해 통 관할구역 내에 거주하는 만30세 이상 만65세 이하의 자로서 안보관이 투철하고 책임감이 확고하여 주민의 신망이 두텁고 지역사회 발전을 선도할 능력과 덕망이 있는 자를 위촉하고, 반장은 안보관이 투철하고 책임감이 확고한 자로서 당해 반원의 신망이 두텁고 활동력이 있는 자 중에서 통장의 추천에 의하여 위촉함
- 또한 통장 임기만료 후 공개모집 결과 신청자가 없는 경우에는 전임(前任) 통장이 재임(再任)할 수 있으며 다만, 2회 이상 공개모집을 하였음

에도 불구하고 신청자가 없는 경우에 한하며, 반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으며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각종 잡부금을 면제받으며 동의 공부와 공공시설의 무료열람 및 사용 등 직무수행시 필요한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음

- 아울러, “동장은 기타 통·반장으로서 부적합하다고 판단된 때 해촉할 수 있다” 라고 규정되어 있음
- 그러나 동춘2동에서는 타시도로 진출되어 관내에 거주하지 아니하는 반장으로서 부적합한 3명에 대하여 2013. 5. 23. 감사일 현재까지 해촉을 시키지 아니한 사실이 있으며 또한 ○○○, ○○○에 대하여는 실비변상(추석, 설 명절휴가비 등 지급), ○○○, ○○○, ○○○에 대하여는 편의제공(쓰레기종량제 일반용 봉투 지급 등)을 한 사실이 있음

**【 처분요구 ≧ 행정상 시정, 재정상 환수 】**

<b>⑤</b>	<b>일반행정</b>	<b>관용차량 운행일지 미작성</b>
----------	-------------	----------------------

- 차량관리부서 및 기관의 차량 운전원은 운행일지에 전일까지의 총 주행거리와 유류 잔고량을 기록하고, 배차당일 주행거리와 유류지급 및 사용량과 잔고량을 기록하여 배차담당공무원의 확인을 받아야 함
- 또한 차량관리부서 및 기관의 장은 보유차량에 대하여 차량운행일지 등 서류를 비치하고 기록을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차량관리 및 업무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관련 서식 중 일부를 차량관리부서 및 기관의 실정에 맞추어 고쳐 사용하거나 시스템을 활용하여 관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그러나 동춘2동 주민센터에서는 2011년 5월 1일부터 2013년 4월 30일까지 총 35회에 걸쳐 차량운행을 하여 차량운행일지 기록유지하여야 함에도 미작성한 사실이 있음

**【 처분요구 ≧ 행정상 주의 】**

⑥

**주민등록**

**자동인증기 관리업무 소홀**

- 연수구수입증지조례 제21조(계기 및 무인민원발급기 사용 수익금의 정산) 및 연수구자동인증기사용업무 처리지침의 수입금 정산(수입금 납부)의 규정에 의하면 계기사용에 따른 증지대금을 수납하였을 때에는 그 다음 날 까지 재무회계규칙 제37조제2호의 납입고지서로 구 금고에 납부토록 되어 있으며 수입금은 "별지 제10호 서식"에 의하여 일일결산 하여야 하고
- 계기 및 무인민원발급기의 고장 및 기타 취급부주의로 잘못 인영된 증지는 결손인으로 소인하되 소인된 면을 원본으로 보관하여 계기 및 무인발급기상의 금액과 발행금액의 차액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음
- 그러나 동춘2동 주민센터에서는 2011. 5. 1 ~ 2012. 4. 30일까지 각종 제증명 자동인증기 수입을 관리하면서 총 18회에 걸쳐 1~3일씩 지연하여 금고에 납입한 사실이 있음
- 또한 발급하지 못하여 결손 처리(잘못 인영된 증지)한 제증명에 대해서는 결손인으로 소인하여 관리하여야 함에도 별도의 결손표시 없이 관리하는 등 자동인증기 관리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 처분요구 ☞ 행정상 주의 】**

⑦

**주민등록**

**주민등록번호조립부 및 주민등록번호부여대장 작성 소홀**

- 주민등록법 제7조,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하면 등록기준지가 확인되고 관내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주민 개개인에게 고유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여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주민등록번호를 부여할 때는 “주민등록번호조립부”에 각 개인의 해당번호를 찾아서 그 번호의 숫자에 연필로 “○”표시와 담당·주무가 소인하고, “주민등록번호부여대장”에 등재하여야 하며 반드시 생년월일·성별로 구분하여 수기 작성·관리하여야 함

- 또한, 번호부여대장 등재누락으로 다른 사람에게 중복 부여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함
- 그러나 동춘2동 주민센터에서는 출생신고시 주민등록번호 조립부 개인의 해당 번호에 소인을 누락(1건)하였으며 주민등록번호 부여대장 작성을 하면서 출생자 주민번호를 오류로 기재한 사실(2건)이 있는 등 주민등록번호조립부 및 주민등록번호부여 대장 작성·관리에 소홀하였음

**【 처분요구 ㄷ 행정상 주의 】**

⑧

**사회복지**

**장애인자동차 표지 발급 부적정**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6조(장애인 사용 자동차 등 표지의 발급대상)제2호 '나' 목에 따르면 장애인과 주민등록표상의 주소를 같이 하면서 함께 거주하는 장애인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자매, 형제·자매의 배우자 및 자녀인 경우에 보호자용 장애인자동차표지를 발급받을 수 있으며,
- 유료도로법 시행령 제8조제1항제3호에 의거 등록장애인 또는 당해 장애인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세대원이 소유하는 차량에 대해 고속도로 할인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되어있으나,
- 등록장애인 ○○○○에 대하여 2007. 11. 16일 장애인자동차표지(보호자 주차가능) 최초발급이후 2012. 10. 15일 차량변경에 따라 장애인자동차 표지(보호자 주차가능)를 재발급 받았으나 차량소유자가 당초 남편(○○○)에서 주민등록표상 주소지가 상이한 자(○○○)로 변경되었음에도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6조제2호'나'목에 의거 장애인자동차 표지 발급 미자격자에 대해 장애인자동차 표지를 발급하였으며, 또한 재교부 당시 고속도로할인카드를 회수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 처분요구 ㄷ 행정상 시정 】**

⑨

**공 사**

**하자검사 업무소홀**

- 「인천광역시연수구하자검사및보수에관한업무처리지침」 제3조(정기하자검사)에 따라 공사발주관리부서에서는 하자담보책임기간 중 년2회 이상 정기하자검사(4월, 10월)를 실시해야 하고, 동 지침 제4조(최종하자검사)에 의거 하자담보책임 만료기간이 도래하기 최소한 1개월 전에 정기하자 검사, 수시검사와는 별도의 최종 정밀검사를 실시하여,
- 하자검사결과 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지체없이 하자보수 의무자에게 통보하여 하자보수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하자검사를 하는 경우에는 하자보수관리부(대장)에 기록·관리하여야 하나,
- 동춘2동 주민센터에서는 그동안 발주 시행한 동춘2동 주민센터 방수공사 등에 대하여 2012년 4월 하자검사 이후 하자검사를 미실시하여 하자검사 및 공사완료 후의 사후관리 업무에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 처분요구 ◁ 행정상 시정 】**

⑩

**민 방 위**

**민방위 업무처리 소홀**

- 민방위기본법 제23조(민방위 대원의 교육훈련) 규정에 의거 민방위 대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10일, 총50시간의 범위에서 민방위에 관한 교육 및 훈련을 받아야 하며, 동법 시행규칙 제39조(교육훈련 불참자 조치 등) 규정에 의거 민방위대 교육훈련에 무단으로 불참하는 자에게는 경고 후 2회까지 보충교육 기회를 주고 보충교육 불참자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 다만, 3개월 이상 외국에 여행 또는 체류중인 사람 등 동법 제23조 제3항에 규정된 자들에 대하여는 민방위대 교육훈련을 면제할 수 있으며, 교육훈련을 면제 받으려는 자는 증명서류를 갖추어 별지(제22호) 서식에 따라 교육훈련 면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 한편, 민방위기본법 제26조 및 동법 시행령 제30조 규정에 의하면 신체장애로 동원에 응할 수 없는 경우, 재해 등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직권 또는 신청에 따라 동원을 미룰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 동춘2동 주민센터에서는 2011년, 2012년도 민방위 교육 및 훈련에 대한 유예·면제자에 대하여 민방위 교육훈련의 면제 신청을 하지 않은 3개월이상 해외 여행 및 체류 중인 불참자들에 대하여 아무런 조치 없이 일괄 면제 조치하였으며, 입원 치료 중이거나 구속 수사 중인 형을 선고받지 않은 사람에 대하여 면제 조치하는 등 민방위 대원의 교육·훈련 및 유예·면제자에 대한 업무를 부적절하게 처리한 사실이 있다.

**【 처분요구 ☞ 행정상 주의 】**

## 동막사랑 자원봉사대 조직 및 『안부 폰』 서비스 실시

- 고령화사회의 독고사 등의 사회적 문제를 예방하고 노인분들의 정서적 지원을 위해 지역내 자원봉사자를 모집, 동춘2동 동막사랑 자원봉사대를 조직하여, 정기적인 안부 전화 서비스를 실시함으로써 노인분들의 생활 활력을 증대시키고 지역내 나눔분위기를 확산시키고자 함

- 대 상 : 관내 어르신 29명(2013. 5. 15현재)
- 기 간
  - 품앗이 활동 : 2012.01.02 ~
  - 자원봉사대 활동 확대 : 2013.4.3~ (연중)
- 활 동 가
  - 동춘2동 동막사랑 자원봉사대 29명
  - 품앗이 회원 3명(2013.4.30현재)
- 사업내용
  - 안부 전화 및 긴급시 방문·지원 서비스
    - 품앗이회원 활동 : 홀몸노인과 품앗이 활동가 1:1로 연계 활동(주1~3회)
    - 자원봉사대 활동 : 노인중 희망자에게 자원봉사자 연계 활동(주1~5회)
- 향후 계획
  - 저소득 노인을 포함한 홀몸노인 대상자 추가 모집 : 연중
  - 자원봉사센터와 연계하여 동막사랑 자원봉사대 일감 확대
- 예 산 : 비예산